

**2016학년도 제2차**  
**<제324차 이사회 회의록>**

2016. 6. 23.

**학교법인 대우학원**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16학년도 제2차

### 〈제32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2 인

1. 일 시 : 2016. 6. 23(목) 07:30 ~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6년 6월 15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이 사 : 추호석,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주인욱, 김동연,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11인)
- 감 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 ◎ 결석임원

- 이 사 : 김성진 (1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교무처장 임석철, 기획처장 이중섭,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4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담당 김창현 (2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 중 열한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 사

김 동 연

이 사

이 영 현

##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처장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24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6-176호(2016.6.15)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동의(안), 의안 제2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3호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8. 심의내용

### 제 1 호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먼저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재임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조교수 2명, 부교수 2명입니다. 임용 대상자 모두 연구업적 평가 등 의료원의 재임용 최소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길주 : 의료원 재임용 심사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주인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료원 전임교원 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 -

김동면

이사

이영현



논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논문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의 점수를 1/2 감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연구진실성 때문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학교의 규칙을 살펴보면 본부에서 재임용심사위원회에 평가의 자의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설정한 세부 기준에 대해 본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평가점수가 산출되었고 이 점을 문제 삼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평가항목 점수의 1/2 감하는 기준이 부당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게 본부의 논리인데 그러기엔 본부의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1/2로 감하는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항목 점수 1/2 감하는 기준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본부에서 사전에 시정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경희대학교의 예를 들면 단과대학별 세부 기준이 세워지면 사전에 본부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항목 점수 1/2 감하는 기준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기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해결해야 할 논의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재임용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본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들이 불제청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번복하고 재임용을 제청한 점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임용의 취지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학교의 기본 가치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에 있는데 해당 교원이 개인적으로 연구가 탁월할지는 모르지만 구성원으로서 과연 법전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나 라는 부분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고 이 부분을 재임용 결과에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재임용을 강행하기 보다는 추후 조사를 진행해 보고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재임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 8월 이사회에서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게 심사 보류를 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면 문제가 있을까요?

교무처장 임석철 :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여부 심의 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함에도 연구 부정행위시 전체논문실적을 1/2까지 감한 점,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근거로 교육 분야에서도 1/2까지 점수를 감한 점, 동일 소속의 최근 재임용된 2명의 부교수들과 비교 시 의 교수업적평가점수가 훨씬 높은데도 교육 및 연구 영역의 평정점수는 크게 낮은 등 과거 재임용심사 사례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1/2 감하는 기준 등이 사전에 피평정자에게 고지되지 않은채 적용된 절차 미준수 등이 다양하게 지적되었습니다. 단과대학별 세부기준을 본부가 사전에 검토, 시정하는 절차는 학교마다 상이한데 본교는 사후에 평정 결과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5분의 위원이 평정을 했더라도 그 절차와 기준에서 합리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인사위원회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단과대학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릴지라도 본부가 이를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사 보류에 대해서는 현재 사립학교법에서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 및 분명한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 신 상 협 : 그럼

의 재임용 심사 보류는 어떻게 되나요?

교무처장 임석철 : 해당 교원은 재임용 기간 마지막 학기의 한 과목이 수강생 부족으로 책임시수가 부족하게 되었으나 이미 여름방학 강의를 계획하고 7월부터 강의를 담당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심사보류로 제청한 것입니다.

이 사 신 상 협 :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에게도

학교에서 이러한 조사가 진행 중이니 향후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현재 재임용심사위원회가 정한 심사 기준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연구실적 부분의 표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전체 논문에 대해서 1/2 감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본부에서 사전에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전원의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우리는 이런 근거가 있어서 이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데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기준은 불합리하니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왜 그 부분을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획처장 이증섭 : 우리 대학의 재임용 프로세스를 설명 드리면 먼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학과에서 구성하고 1차 평정심사 후 그 결과와 기준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본부 인사위원회가 사전에 단과대학의 기준과 평정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후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보고 문제가 있으니 법전원장과 재임용심사위원장에게 평정내역을 제출하거나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산출근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불출석이 법전원 평가기준의 불합리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원래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둔 것은 학교의 내부규칙에 의해서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으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최종적 판단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 신 상 협 : 그 분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해 보셨나요?

이 사 박 상 일 :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회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견으로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불출석 하겠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아마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라는 취지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교무처장 임석철 : 법전원장에게 평정내역을 제출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아닌 재임용심사위원장에게 요청하라는 답변을 보내오에 따라 재임용심사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및 설명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5명의 재임용 심사과정을 주관하였고 평가 집계표도 만들었으며 종합심사 의견도 쓰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충분히 독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요청하였으나, 출석을 약속하셨다가 갑자기 못 나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산출내역이 없는 것이 아닌가 추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문휘창 : 제 생각에도 신상협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평가항목 점수를 1/2 감한다는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보다 단과대학에서 더 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은 반드시 본부의 규정위원회 등에 등록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모른다는 얘기는 본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절차적으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신희택 :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평정이 잘못되었다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정내용을 교원인사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평정점수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각 단과대학에서 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정을 하라는 이유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인데 이러한 평정점수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무효까지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정점수 자체를 60점 미만에서 60점 이상으로 점수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자체는 반대로 해석해보면 제대로 설명을 들어보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평정을 하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원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학생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인데 절차가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임용이 되고 나면 해당학과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다같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면서도 재임용을 동의하였을 경우 추후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 관련된 다툼이 일어날 때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상협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 신상협 : 무리하게 진행을 하기 보다는 도 여름방학 강의를  
통해 책임시수를 충족시키겠다는 전제로 유예가 되었는데 제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이런이런 조사를 거쳐야 되니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보류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박상일 : 분명한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각 재임용심사위원회별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을 해 주었고 문제는 그렇게 정해진 기준이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불합리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한 면이 있다는 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바로 잡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재임용 심의 권한을 교원인사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정관, 규정 및 규칙에서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평정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만약 그 평정심사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총장께서 재심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무처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따라 6월말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재심사할 시간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데, 현재 규정에 따라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고, 그 위원회에는 두 분의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평가가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간에 외부인사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평가점수를 주었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이 인사위원회에서 위임을 해 주었지만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실 때 이런이런 점이 불합리하니 수정해서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의 학교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에서 평정한 객관적인 60점 미만이란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정점수에 따라

는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인데 이분한테 통보할 때는 현재로서는 평정결과에 따라 탈락이고, 다만 학교에서 규칙에 따라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8월 이사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통보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무처장 임석철 :** 재임용 평정심사가 법전원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점수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형평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적어도 정량적인 논문게재실적과 교육영역의 담당수업시간 수 및 수업계획서 등의 평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 박 상 일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유로 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감 사 배 홍 기 :** 이 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법전원의 명예와 아주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분에 대한 재임용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일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학교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 절차를 밟아 재임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8월 이사회에서 재임용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사회에서는 이분에 대한 재임용 동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 윤 성 복 :** 저는 도 같은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분도 6월말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론을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법적으로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 통보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분도 현재 조건으로는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고 8월 이사회에서 재임용 충족여부를 재논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희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이 사 신 희 택 : 법률적인 관점에서 조건부 재임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은 재임용 심사 보류라는 형태로 재임용 제청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임용이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 같은 케이스로 논의되어야 하는게 맞고, 그렇다면 오늘 의 재임용 제청을 해주셔야 될 듯 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동의합니다. 총장님께서 임용제청권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 제청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총장) 김동연 : 이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절차 보완 및 형평성 사유에 근거하여 를 임용기간 3년의 조교수로 재임용 제청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오랜 시간 논의한 바 학교의 재임용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임용 동의(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택 : 재임용 동의 대상자 중 와 의 재임용 동의는 부결하고, 각각 재심사 결과와 책임시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8월 이사회에서 재임용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 나머지 재임용 동의(안)은 찬성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신희택 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중 10인 찬성 / 기권 1인)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본교 전임교원 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 이사 중 10인의 찬성으로 와 의 재임용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재임용 동의 내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기계공학과	이정일	조교수	2016.9.1 ~ 2019.8.31 (3년)
약학과	전상민	조교수	2016.9.1 ~ 2019.8.31 (3년)
약학과	신수영	조교수	2016.9.1 ~ 2019.8.31 (3년)
다산학부대학	Philip Chivers	조교수	2016.9.1 ~ 2019.8.31 (3년)
법학전문대학원	Christopher Salatiello	조교수	2016.9.1 ~ 2017.8.31 (1년)
영상의학교실	김진우	조교수	2016.9.1 ~ 2019.8.31 (3년)
병리학교실	권지은	조교수	2016.9.1 ~ 2019.8.31 (3년)
미생물학교실	권명희	부교수	2016.9.1 ~ 2022.8.31 (6년)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박준은	부교수	2016.9.1 ~ 2022.8.31 (6년)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제 2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이증섭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은 산학협력단 내 산학구매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기능별 조직체계를 완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향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1조의 2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②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팀 및 LINC사업팀을 둔다.</p> <p>③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p>	<p>제11조의 2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현행과 같음)</p> <p>②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팀, <u>산학구매팀</u> 및 LINC사업팀을 둔다.</p> <p>③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④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특별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운영기구를 둘 수 있다.</p> <p>⑤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p>	
	<p><b>부 칙</b></p> <p><b>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p>

### 제 3 호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임석철 :**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명예퇴직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교원 연구년 복무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교원의 경우 연구년 기간동안 지급된 보수를 반납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강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일반기업체의 경우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 및 비용의 경우 급여로 지급된 것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반환을 받지 못한다는 확립된 판례가 있어 말씀 드렸습니다.

**교무처장 임석철 :** 말씀하신 이슈가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년 복무의무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이직한 교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학교 자문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해당 교수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선지급한 것이기에 2년의 복무의무기간이 만료되어야 반환의무가 면제가 되고 그 전까지는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연구년 복무의무기간 미이행에 따른 보수 반환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원(안)의 내용으로 개정 시행을 하고 추후 보완할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간을 두고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싶습니다.

이 사 신 희 택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 (명예퇴직의 요건)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p> <p>1. <u>최근 3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으로</u>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p> <p><u>&lt;신 설&gt;</u></p> <p>2. 본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교원의 인원조정이 필요하여 총장이 제안하는 명예퇴직에 본인이 동의하는 교원</p> <p>② 전항에 불구하고 매 학기 명예퇴직 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교원</p> <p>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교원</p> <p>3. <u>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복무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교원</u></p> <p>4.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교원</p>	<p>제2조 (명예퇴직의 요건)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p> <p>1. <u>본인이</u>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p> <p>2. <u>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으로 총장이 제안하는 명예퇴직에 본인이 동의하는 교원</u></p> <p>3. 본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교원의 인원조정이 필요하여 총장이 제안하는 명예퇴직에 본인이 동의하는 교원</p> <p>② 전항에 불구하고 매 학기 명예퇴직 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교원</p> <p>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교원</p> <p>3. <u>&lt;삭 제&gt;</u></p> <p>4.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교원</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제3조 (명예퇴직수당 산정) ① 명예퇴직교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p> <p>②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의 퇴직 당해년 도 <u>기본연봉</u>의 1/12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 함을 원칙으로 <u>한다</u>.</p> <p>③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p> <p><u>&lt;신 설&gt;</u></p> <p>제4조 (명예퇴직의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신청서 를 작성하여 퇴직예정일 <u>120일</u>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 (명예퇴직수당 산정) ① 명예퇴직교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p> <p>②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의 퇴직 당해년 도 <u>기초연봉</u>의 1/12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 함을 원칙으로 <u>하며, 여기서 기 초연봉이라 함은 본교 보수규정 제4조(교원보 수)를 기준으로 한다</u>.</p> <p>③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p> <p>④ <u>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복무의 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교원의 경우 연구년 기간에 지급된 보수 중에서 요구 재직기간과 비교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는 기 간만큼의 보수를 교무처장이 지정한 날까지 본 교로 반환하여야 한다</u>.</p> <p>제4조 (명예퇴직의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신청서 를 작성하여 퇴직예정일 <u>60일</u> 전까지 소속 대 학(원)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 <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24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종전과 같  
이 저와 김동연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전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24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11시 0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16 년 6 월 23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 호 석
이 사	윤 성 복	윤 성 복
이 사	문 길 주	문 길 주
이 사	신 희 택	신 희 택
이 사	주 인 옥	주 인 옥
이 사	김 동 연	김 동 연
이 사	박 상 일	박 상 일
이 사	신 상 협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이 영 현
이 사	최 홍	최 홍
이 사	김 선 용	김 선 용
감 사	문 휘 창	문 휘 창
감 사	배 홍 기	배 홍 기